

문서번호	건강증진과-898
보존기간	3년
결재일자	2011.01.12.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복지건강본부장 방침 제(21)호

주무관	치매관리팀장	건강증진과장	복지건강본부장

시민이 행복한 서울!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

2011년 서울특별시 및 지역 치매지원센터 운영 계획



2011. 1

복지건강본부
(건강증진과)

2011년 서울특별시 및 지역 치매지원센터 시설 운영 계획

2011년 서울특별시 및 지역치매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치매통합관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중증 치매환자 비율 감소 및 사회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9조 및 제29조의2, 동법시행령 제12조

■ 시설현황 : 26개소 (붙임1)

○ 서울특별시치매센터 1개소,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25개소

■ 2011년도 운영예산 : 총 7,021,717천원

○ 서울특별시치매센터 운영 (시비 100%) : 586,717천원 (전년 대비 10,987천원 감소)

○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시비 50%, 구비 50%) : 6,435,000천원 (전년 대비 225,000천원 증가)

2 최근 3년간 운영현황

■ 서울특별시치매센터 : 사업 총괄기획, 표준프로그램 개발, 교육 연구개발 등

○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기술적 지원

- 연도별 서울시치매관리사업 지침서 · 결과 보고서 제작 (2007~2008)

- 인지건강프로그램 매뉴얼(2007~2008), 치매관련 시설 조사·자료집(2008), 치매 상담 매뉴얼(2010), 홍보자료 지원 등

○ 보건소 및 치매지원센터 직원 전문역량 교육 및 노인요양시설 · 데이케어 센터 등 치매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 실시(2008~2010)

○ 치매관련 연구개발 사업 추진(2009~2010) : 치매예방 운동프로그램, 주부양자 스트레스관리, 치매 매핑·치매가든 프로그램 등 개발 등

○ 치매통합관리 정보시스템(홈페이지, 등록관리 DB) 구축 · 운영

○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회 실시 (2009~2010)

지역치매지원센터 : 치매인식개선 교육·홍보 및 치매조기검진, 등록관리 등

- 치매조기검진은 만60세 이상 시민 대상으로 『선별검진→ 정밀검진(1단계 신경 심리평가, 2단계 임상평가) → 원인확진검사』 3단계로 진행
 - 최근 3년간 352,554명(만 60세 이상 인구의 24% 해당)에게 선별검진 실시
- 치매조기검진을 통하여 대상자를 치매환자, 고위험, 정상군으로 구분하여 상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최근 3년간 807,189명(만 60세 이상 인구의 20% 해당)에게 등록관리 서비스 제공

<표> 최근 3년간 치매조기검진 및 등록관리 실적

(단위 : 명, %)

구분		계	2008	2009	2010	비고
치매 조기 검진	선별검진	352,554	54,614	112,854	185,086	만60세이상 24% 검진
	정밀검진	47,970	6,268	14,047	27,655	
	원인확진검사	5,731	732	1,889	3,110	
등록 인원	소계	318,683	49,561	103,934	165,188	만60세이상 20% 등록
	치매	12,937	2,024	3,892	7,021	
	고위험	8,354	878	2,350	5,126	
	정상	297,392	46,659	97,692	153,041	
치매예방등록관리서비스 제공		807,189	211,779	213,367	382,043	연인원
치매지원센터 설치(누계)			11	25	25	

※ 2010년도 만 60세이상 인구 1,417,601명 (통계청 자료)

'10년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교부)액	집행율(%)	추진 실적
서울시치매센터	597,707	597,704	100	인건비 238,501 운영비 등 359,203
지역치매지원센터	6,210,000	6,210,000	100	25개 자치구 운영비 6,210,000 (1개소당 225,000천원)

3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서울특별시치매센터의 경우

- 자치구치매지원센터와 업무성격이 상이하고 직원 구성 자격요건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지급 기준이 자치구치매지원센터와 동일함
 - 서울특별시치매센터 : 시 차원의 정책개발, 연구분석, 중장기 계획 수립 등 업무 성격상 고학력 전문가(석사학위 이상자) 및 경력자 필요
 - 자치구치매지원센터 : 지침에 의거 일상적 업무 반복 수행
- 센터 내 직위별(사무국장과 일반직원 간) 임금차이가 과소(過小)
 - ⇒ 직원의 불만이 상존하고, 이직률이 높아 서울특별시치매센터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기준 개선이 시급함

■ 지역치매지원센터의 경우

- 센터 내 직위별(팀장과 일반직원 간) 임금차이가 과소(過小)
 - ⇒ 직위가 높을수록 업무의 책임감, 강도가 더 강함에도 일반 팀원과 보수에서 큰 차이가 없어 불만 상존 및 업무 생산성 저하
- 자치구별 60세 이상 인구와 치매지원센터 개소 년도가 다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센터 운영비를 일률적으로 1개소 당 248,400천원씩 지원함에 따른 문제 발생 우려
 - ⇒ 노인 인구수와 개소년도를 고려하여 센터별 248,400천원~273,400천원 차등 지원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본급 8% 인상에 따른 「치매지원센터」 인건비 지원 기준표 조정 필요 (복지정책과-8767, '10.12.31)

4 2011년도 지원계획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차등 지원 (붙임2)

구 분	기 준	지원액 (시비)	대상 자치구
A 그룹 (6개구)	① 60세이상 인구(45,000명 이상) ② 개소년도 '07~'08년도인 자치구	273,400천원	성동구('07), 성북구('07) 강동구('07), 은평구('08) 양천구('08), 송파구('08)
B 그룹 (6개구)	① 60세이상 인구 (35,000~45,000명 미만) ② 개소년도 '08~'09년도인 자치구	260,900천원	마포구('07), 동대문구('08) 도봉구('08), 관악구('08) 노원구('09), 강서구('09)
C 그룹 (12개구)	① 60세이상 인구(35,000명 미만) ② 개소년도 '09년도인 자치구	248,400천원	종로구, 중구, 용산구 광진구, 중랑구, 강북구 서대문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남구

※ 서초구의 경우 시설기준 미충족으로 인하여 운영비 지원 계획 별도 수립 예정

2011년도 센터 인건비 지원기준표 조정 (붙임3)

- 기본급 8% 인상분 반영
- 제 수당(기말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가계보조수당, 교통·급식비)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인건비 지급체계 간소화
 - 상여금(명절휴가비)과 가족수당, 특수근무수당은 현행 체계 유지
- 센터장, 사무국장(자치구의 경우 팀장), 직원(전문요원, 일반요원, 기타요원)에 대한 보수 체계 차별화

「서울특별시치매센터」 인건비 지원 기준 개선

- 센터 고유업무(교육·연구 및 정책개발 등)에 대한 연구 수당 신설
 - 직원에게 월 50,000원 정액 지급
- 센터장과 사무국장 직책수당 인상

현 행
센터장 : 70,000원 사무국장 : 50,000원

⇒

개 선
센터장 : 100,000원 사무국장 : 70,000원

■ **교부방법** : 매분기별 서울특별시치매센터 및 해당 자치구 자금교부

■ **예산과목**

○ 서울특별시치매센터 운영

- 정책)시민건강수준향상, 단위)노인,모자보건서비스 확충,
세부)서울특별시치매센터운영, 편성목)민간이전, 통계목)민간위탁금

○ 자치구치매지원센터 운영

- 정책)시민건강수준향상, 단위)노인,모자보건서비스 확충,
세부)지역치매지원센터운영, 편성목)자치단체등이전, 통계목)자치단체경상보조

5 행정 사항

■ **센터 운영 사업예산 확정내시 및 인건비 기준표 통보** : '11.1.12(수)

■ **'10년도 사업비 정산보고 및 '11년도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 → 시)** : '11.1.20(목)

- 치매조기검진, 등록관리, 교육·홍보 등 사업내용 및 보조금 세입·세출이 포함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 제출받아 검토·승인

■ **지도·감독 철저**

○ 정기 지도·점검(매년2회) 및 수시지도 점검 실시

- 당초 사업계획에 의한 효율적인 사업추진 여부 및 적정한 예산집행, 퇴직금 관리 등 지도점검 실시
- 자치구 '치매지원센터'는 해당 자치구(보건소)에서 지도점검 후 시에 보고

붙임 : 1. 서울시 및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시설현황

2. 서울시 및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내역

3. 센터 종사자 봉급 및 수당 지급 기준표. 끝.

붙임 1 서울시 및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시설현황

※ '10.12월 현재 26개소

(단위 : 명,㎡)

시설명	대표자	직원수	연면적	소재지	운영법인	개소일
계		277	-	-	-	-
서울특별시치매센터	이동영	8	239.64	마포구 대흥동 445	서울대학교병원	2006.12.20
종로구치매지원센터	신서연	10	475.52	종로구 평창동 235-2	서울대학교병원	2009.10.12
중구치매지원센터	김영인	9	477.78	중구 신당6동 291-48	서울성모병원	2009.09.01
용산구치매지원센터	나 철	9	448	용산구 이태원동 34-87	중앙대 용산병원	2009.10.19
성동구치매지원센터	김승현	12	558	성동구 성수동 1가 685-54	한양대학교병원	2007.07.16
광진구치매지원센터	한설희	12	444	광진구 자양동 13-28	건국대학교병원	2009. 3.1
동대문구치매지원센터	송지영	11	594	동대문구 청량리동 205-780	경희의료원	2008.04.01
중랑구치매지원센터	이유라	12	430	중랑구 면목5동 161-34	시립북부노인병원	2009.11.23
성북구치매지원센터	유승호	11	581	성북구 하월곡동 46-1	건국대학교병원	2007.06.27
강북구치매지원센터	박건우	11	991.75	강북구 수유동 279-236	고대안암병원	2009.8.24
도봉구치매지원센터	장윤숙	11	430	도봉구 방학1동 720-33	도봉병원	2008.02.25
노원구치매지원센터	이동우	9	430	노원구 월계4동 942	상계백병원	2009.12.15
은평구치매지원센터	송은향	12	487.82	은평구 불광동 130-2	시립서북병원	2008.06.27
서대문구치매지원센터	김어수	10	981	서대문구 홍은2동 425-3	신촌세브란스병원	2009.12.16
마포구치매지원센터	양동원	11	495	마포구 대흥동 32-29	여의도성모병원	2007.07.20
양천구치매지원센터	최경규	11	753.71	양천구 신월1동 94-1	이대목동병원	2008.04.14
강서구치매지원센터	정지향	11	603.49	강서구 염창동 277-14	이대목동병원	2009.09.01
구로구치매지원센터	정인과	12	450	구로구 고척동 76-160	고대구로병원	2009. 6.15
금천구치매지원센터	기백석	11	906	금천구 독산1동 289-5	중앙대병원	2009.8.25
영등포구치매지원센터	박신영	10	678.86	영등포구 당산동3가 408	대림성모병원	2009.12.1
동작구치매지원센터	이준영	9	720	동작구 사당동 1049-11	시립보라매병원	2009.10.5
관악구치매지원센터	추일한	10	517.59	관악구 관악로 462	서울대병원	2008.11.26
서초구치매지원센터	임현국	11	264	서초구 서초동 380	서울성모병원	2008.9.1
강남구치매지원센터	나덕렬	12	900	강남구 삼성동 113-26	삼성서울병원	2009.12.29
송파구치매지원센터	김성운	11	437	송파구 장지동 850-2	서울아산병원	2008.03.01
강동구치매지원센터	연병길	11	495	강동구 성내동 541-2	강동성심병원	2007.09.05

붙임 2 서울시 및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내역

연 번	구 분	총 계	시 비			구 비 (50%)
			소계	운영비(50%)	복지수당(100%)	
	총 계	12,646,717	7,021,717	6,424,057	597,660	5,625,000
	서울시	586,717	586,717	574,057	12,660	-
1	종로구	473,400	248,400	225,000	23,400	225,000
2	중 구	473,400	248,400	225,000	23,400	225,000
3	용산구	473,400	248,400	225,000	23,400	225,000
4	성동구	523,400	273,400	250,000	23,400	250,000
5	광진구	473,400	248,400	225,000	23,400	225,000
6	동대문구	498,400	260,900	237,500	23,400	237,500
7	중랑구	473,400	248,400	225,000	23,400	225,000
8	성북구	523,400	273,400	250,000	23,400	250,000
9	강북구	473,400	248,400	225,000	23,400	225,000
10	도봉구	498,400	260,900	237,500	23,400	237,500
11	노원구	498,400	260,900	237,500	23,400	237,500
12	은평구	523,400	273,400	250,000	23,400	250,000
13	서대문구	473,400	248,400	225,000	23,400	225,000
14	마포구	498,400	260,900	237,500	23,400	237,500
15	양천구	523,400	273,400	250,000	23,400	250,000
16	강서구	498,400	260,900	237,500	23,400	237,500
17	구로구	473,400	248,400	225,000	23,400	225,000
18	금천구	473,400	248,400	225,000	23,400	225,000
19	영등포구	473,400	248,400	225,000	23,400	225,000
20	동작구	473,400	248,400	225,000	23,400	225,000
21	관악구	498,400	260,900	237,500	23,400	237,500
22	강남구	473,400	248,400	225,000	23,400	225,000
23	송파구	523,400	273,400	250,000	23,400	250,000
24	강동구	523,400	273,400	250,000	23,400	250,000
25	미교부역	248,400	248,400	225,000	23,400	-

붙임 3

센터 종사자 봉급 및 수당 지급 기준표

○ 서울특별시치매센터

- 기본급 지급 기준표

(단위:천원)

호봉	사무국장	종사자	
		전문사업요원	일반사업요원
1	1,596	1,546	1,511
2	1,645	1,595	1,555
3	1,694	1,644	1,598
4	1,742	1,692	1,642
5	1,791	1,741	1,686
6	1,840	1,789	1,730
7	1,888	1,838	1,773
8	1,937	1,887	1,817
9	1,985	1,935	1,861
10	2,034	1,984	1,904
11	2,082	2,032	1,948
12	2,131	2,081	1,992
13	2,180	2,130	2,036
14	2,228	2,178	2,079
15	2,277	2,227	2,123
16	2,325	2,275	2,167
17	2,374	2,324	2,211
18	2,423	2,373	2,254
19	2,471	2,421	2,298
20	2,520	2,470	2,342
21	2,568	2,518	2,386
22	2,617	2,567	2,429
23	2,666	2,616	2,473
24	2,714	2,664	2,517
25	2,763	2,713	2,561
26	2,811	2,761	2,604
27	2,860	2,810	2,648
28	2,909	2,859	2,692
29	2,957	2,907	2,736
30	3,006	2,956	2,779

※ 전문사업요원 : 일반사업요원 자격에 해당하면서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자격을 추가로 획득한자(전문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 일반사업요원 :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국가자격)을 소지한 자 등

- 서울특별시치매센터 종사자 수당지급 기준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1) 상여금			
가.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00%	봉급액의 50% 씩 연2회, 설과 추석에 속하는 달의 정기보수 지급일(도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센터장이 정한 날)
(2) 가족수당	전 종사자	배우자 30 기타 부양가족 20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참조
(3) 특수근무수당			
가. 직책수당	센터장 팀 장	정액 100 정액 70	매월 정기보수일에 지급
나. 연구수당	전 종사자	정액 50	매월 정기보수일에 지급

○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 기본급 지급 기준표

(단위:천원)

호봉	팀 장	종사자		
		전문사업요원	일반사업요원	기타사업요원
1	1,596	1,546	1,511	1,436
2	1,645	1,595	1,555	1,477
3	1,694	1,644	1,598	1,516
4	1,742	1,692	1,642	1,556
5	1,791	1,741	1,686	1,595
6	1,840	1,789	1,730	1,636
7	1,888	1,838	1,773	1,676
8	1,937	1,887	1,817	1,715
9	1,985	1,935	1,861	1,755
10	2,034	1,984	1,904	1,794
11	2,082	2,032	1,948	1,835
12	2,131	2,081	1,992	1,875
13	2,180	2,130	2,036	1,914
14	2,228	2,178	2,079	1,955
15	2,277	2,227	2,123	1,994
16	2,325	2,275	2,167	2,034
17	2,374	2,324	2,211	2,075
18	2,423	2,373	2,254	2,113
19	2,471	2,421	2,298	2,154
20	2,520	2,470	2,342	2,194
21	2,568	2,518	2,386	2,233
22	2,617	2,567	2,429	2,274
23	2,666	2,616	2,473	2,313
24	2,714	2,664	2,517	2,353
25	2,763	2,713	2,561	2,394
26	2,811	2,761	2,604	2,433
27	2,860	2,810	2,648	2,473
28	2,909	2,859	2,692	2,512
29	2,957	2,907	2,736	2,552
30	3,006	2,956	2,779	2,593

- ※ 전문사업요원 : 일반사업요원 자격에 해당하면서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자격을 추가로 획득한자(전문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 ※ 일반사업요원 :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국가자격)을 소지한 자 등
- ※ 기타사업요원 : 행정요원 등 기타 사업수행 인력

-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지급 기준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1) 상여금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00%	봉급액의 50% 씩 연2회, 설과 추석이 속하는 달의 정기보수 지급일(도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센터장이 정한 날)
(2) 가족수당	전 종사자	배우자 30 기타 부양가족 20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참조
(3) 특수근무수당			
직책수당	센터장 팀 장	정액 70 정액 50	매월 정기보수일에 지급

끝.